

20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(환기장치 설치비용) 사업 공고

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『건강일터 조성지원』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2월 31일

고용노동부 장관 ·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1. 사업개요

- 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

2. 지원자격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, 허가대상 · 관리대상 유해물질, 조리 부산물,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* 설치가 필요한 자

* 국소배기장치, 급배기 환기장치, 고열작업 전체환기장치 (4. 지원내용 중 '지원품목' 정보 참조)

3. 참여제한

-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지원을 제한하며,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

< 참여제한 사유 >

- ▶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▶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
- ▶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(보조금 부담수급 등) 및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
- ▶ '25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, 안전일터 조성지원,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

4. 지원내용

- (지원예산) 158.25억원
- (지원한도)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(단,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)

※ 과거 건강일터 조성지원 환기장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,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 지급

- (지원비율) 공단 판단금액의 70%~50% 지원

신청 대상	지원비율
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*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	70%
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	50%

*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또는 중소벤처24(smes.go.kr)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[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]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
- (지원품목)

지원 품목	품목 조건
관리대상유해물질, 허가대상유해물질,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(금속가공유 포함), 분진작업,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	- 신규 설치, 교체 설치(설비전체 또는 일부분)에 한하여 지원 가능 -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불가
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	
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*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·배기환기장치 *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(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- 설비전체를 신규·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- 강제급기 및 강제배기 방식에 한하여 지원 가능
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	- 신규 설치, 교체 설치(설비전체 또는 일부분)에 한하여 지원 가능

※ 산업재해 등 사회적 현안 고용노동부고시, 공단 내규 개정 등에 따라 지원품목 별 재원 규모 변경 가능

- (지원방식) 공모방식(일정기관 일괄 접수) 신청 접수 및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
 - 작업환경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에 대한 신속 지원 제도 운영
 - 공모접수·선정 완료 후 잔여재원은 추가 공고 및 접수

구분	일반지원	신속지원
지원대상	환기장치 설치 희망 사업주	고용부 감독 또는 공단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작업환경 개선 명령·지도를 받은 사업주
신청기간	공모접수 : '25. 1. 2. ~ 1. 31.	상시

○ (지원조건)

- 후드, 덕트, 공기정화장치, 제어풍속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환기장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-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는 「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 (KOSHA GUIDE W-26-2023)」에 준하여 설치

※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생략 가능

-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사업장의 경우 투자완료 전까지 측정 실시 (작업환경측정 대상인 경우)
- 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
-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(제작)원가 검토보고서를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

※ 원가 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일부 지원

<공사(제작)원가 검토보고서 제출 및 작성비용 지원>

▶ 투자완료 시 원가검토(정산)보고서 제출

- 보조금 신청 시 견적서(도면, 세부산출내역서 등)를 제출하여 보조금 결정
- 투자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*에서 작성한 원가검토(정산)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최종 확정**

* 원가계산용역기관[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(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)를 충족하는 업체: 등록증 또는 인증서 등으로 확인]

** 견적서,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 중 최저금액과 원가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의 합을 보조지급 기준 가격(공단 판단금액)으로 산정(단, 최초 보조금 결정금액 초과 불가)

▶ 원가검토(정산)보고서 작성 비용 인정금액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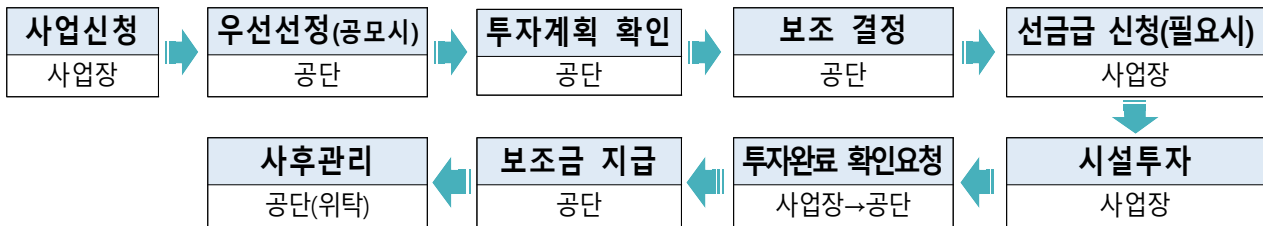
공사금액 (소요금액)	4천만원 미만	4천~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
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(공단)	40만원	50만원	60만원

예시) 근로자수 30인 사업장의 환기장치 공사금액 5,000만원인 경우

- (총 소요금액) 5,000만원(공사금액) + 60만원(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) = 5,060만원
- (보조확정금액) 5,060만원(공단판단금액) × 70%(보조비율) = 3,542만원

※ 원가 계산(정산)이 공급업체 의뢰로 진행된 경우, 원가검토 정산비용은 지급되지 않음

5. 세부 사업절차 및 조건



① 사업신청(사업장)

- (접수·선정) 공모방식(일정기관 일괄 접수)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
- (신청기간) '25. 1. 2.(목) ~ 1. 31.(금) 18:00
- (신청방법)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(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)
※ 우편의 경우 신청기한 내 소인일(우편 접수일자) 인정
- (접수처)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(문의 1644-8845, 덧붙임2 참조)
- (제출서류)

제출 서류	비고
❶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(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)	덧붙임3-1 양식 참조
❷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	
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	
❹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공단↔사업주)	
❺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(반드시 사업주의 자필 서명 후 제출)	
❻ 사업자 등록증	
❼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, 설계근거, 도면(계통도 등) 등	
❽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
❾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
❿ 중소기업확인서(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)	
⓫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점수부여 증빙서류 (덧붙임1 참조)	해당시 제출

※ 신청양식 공단 홈페이지 게시 (kosha.or.kr → 사업소개 → 재정지원 → 건강ilter 조성지원 → 공지사항)

② (선정) 공모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(덧붙임1)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(공단)

- 선정 결과는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개별 안내
- 급·배기환기장치,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 품목 재원 분리 운영 및 선정

- ③ (투자계획 확인) 선정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또는 서면확인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, 설계의 적정성 등 투자계획 확인(공단)
-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제출서류(증빙자료)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
- ④ (보조금 결정) 보조금 결정대상자 및 보조금액 결정(공단)
- 사업장별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대상자와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지원 가능 금액을 일선기관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
 -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 불가함(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)
- ⑤ (시설개선)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시설개선(사업주)
-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* 시설개선 후 투자완료확인 요청 (덧붙임 3-2 참조)
 - ※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,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
 - 선금급 신청(사업장 요청 시)
 - 투자금액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 지원을 위해 선금급 제도 시행
 - 선금급 신청양식(덧붙임 3-3 참조)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, 보조결정 금액의 70% 이내에서 선금급 가능
 - ※ 선금급은 사업주에게 교부하며, 공급업체에 위임지급하지 않음
 - 공사업체, 설계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함

⑥ (투자완료 확인)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(사업주)

제출서류
❶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
❷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
❸ 세금계산서(청구용) 사본
❹ 구매·설치 계약서 사본
❺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
❻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
❼ 지급보증보험 증권
❽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
❾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
❿ 공사(제작) 원가(검토)보고서

※ 제출서류 중 원가검토 보고서,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
<지급보증보험 증권>

- ▶ 보험 계약기간은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~ 4년(사후관리기간(3년)+환수조치 필요기간(1년))으로 적용
(예시) 투자완료확인 요청일: '25. 5. 13. (지급보증기간: 4년)
보험기간: '25. 5. 1. ~ '29. 4. 30.
 - ▶ 피보험자 : 안전보건공단(사업자등록번호 122-82-04898), 보험계약자 : 지급대상사업장
 - ▶ 발급기관 :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
- ※ 문의처: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(052-274-0021) 또는 관할 지역 지점

- 공단은 투자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, 시설의 적정여부 및 실거래 입증서류 적정여부 확인
-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(제작) 원가(검토)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- 설비 설치 장소,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, 보완 또는 부적정으로 처리될 수 있음
- 제출한 서류(세금계산서 등)를 사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,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,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
-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(사업장 요청시)
 - 투자비용 사업장 부담 완화 및 공급업체 납품기한 단축 등 신속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(덧붙임3-3 참조)

-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, 소요비용 전체에 대한 실거래 입증서류가 아닌 자부담금 입금(부가세 포함) 실거래 증빙서류와 위임장 등*을 제출

*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하여야 함

⑦ (보조금 지급) 투자완료확인 이후 1~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(공단)

⑧ (사후관리)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위하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 실시(공단 위탁기관)

- 사후관리기간(3년)동안 공단 위탁기관이 년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며,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

6.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취소 및 제재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(최대 5배)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

※ (거짓·부정)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, 5년 제한, (임의매각·훼손·분실)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, 3년 제한, (목적외사용·국외이전)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, 3년 제한

<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>

- ▶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- ▶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
- ▶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- ▶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
- ▶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
- ▶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7. 문의처 :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8845